

2023년 조세변경동향

Dec., 2023
서우회계법인베트남
조성룡 대표회계사

서우회계법인베트남
HP: www.seouvietnam.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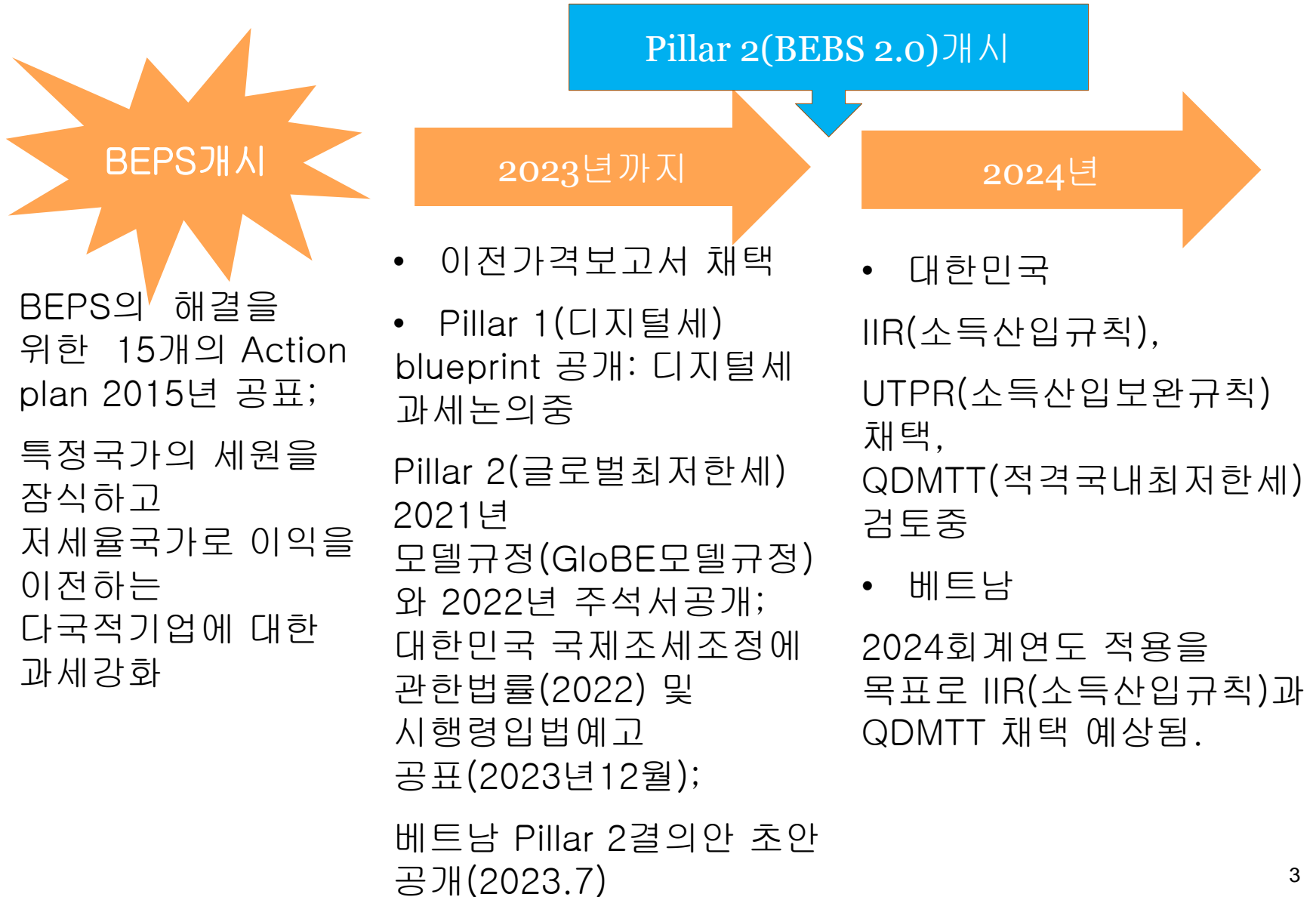


목차

BEPS 2.0	3
2023년 조세변경과 Official Letter	9
기업의 life cycle 별 주요 해당세목	17
세무조사 이슈	18
서우회계법인베트남 소개	20

BEPS(Base Erosion Profit Shifting) 소득이전을 통한 소득잠식

• BEPS(Base Erosion Profit Shifting) Rule의 연혁



BEPS 2.0(Pillar 2)

IIIR방식 글로벌최저한세:최상위지배회사가 소재한 관할국에서 글로벌최저한세

대한민국 국조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법률(국조법§60등) 개정내용>

(개요) 다국적기업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 적용 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 부여

- 글로벌최저한세=추가세율*과세대상소득(순GloBE이익-실질기반제외소득(**))+가산당기추가세액-적격국내최저한세추가세액(QDMTT)

➤ 추가세율=15%-실효세율(*)

(*)실효세율=조정후대상조세/순 GloBE이익

(**)실질기반제외소득: 유형자산 연평균액의 5% 및 급여의 5%를 소득공제함.

(적용대상)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5억 유로(약 1조 KRW)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상위모회사**

(과세액)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조정후대상조세(*)/순 GloBE이익(**))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과세

(*)조정후대상조세: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에 조정사항을 반영한 세액 합계

(**)순GloBE이익: 자회사 관할국 회계상 순손익에 조정사항을 반영한 소득

(시행시기) '24.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BEPS 2.0

적격국내최저한세추가세액(QDMTT):구성자회사의 소재 관할국에서 글로벌최저한세

- Pillar 2 모델규정상

QDMTT=추가세율*과세대상소득(순GloBE이익-실질기반제외소득)+가산당기추가세액(해당시)

➤ 추가세율=15%-실효세율

실효세율=조정후대상조세/순 GloBE이익

➤ 실질기반제외소득: 적격유형자산 연평균액의 5% 및 급여의 5%를 소득공제함.

(적용대상)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5억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자회사의 관할국에서** QDMTT 과세

(과세액)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조정후대상조세/순 GloBE이익)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만큼 **구성자회사의 관할국에서** 추가과세

BEPS 2.0

적격국내최저한세추가세액(QDMTT):구성자회사의 관할국에서 글로벌최저한세

- 베트남 Ministry of Finance에 제출된 Pillar2적용을 위한 Draft Resolution, 계속;

QDMTT=추가세율*Excess profit(순GloBE이익-실질기반제외소득)+가산당기추가세액(해당시)

➤ 추가세율=15%-실효세율

실효세율=베트남내 실재납부한 조세(*)/순 GloBE이익

➤ 실질기반제외소득: 적격유형자산 연평균액의 7.8% 및 급여의 9.8%를 소득공제한 후 향후 10년간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최종 적격유형자산 연평균액의 5% 및 급여의 5%를 소득공제함.

➤ 순GloBE이익(**)=GloBE이익-이월결손금(*)

(*)이연법인세비용, 이월결손금의 처리방안 Pillar2에 근거한 베트남내 추가입법 필요

(**)순Globe이익 산출규정 Pillar2에 근거한 베트남내 추가입법 필요

글로벌 최저한세:글로벌최상위모회사가 베트남내 관할국인 경우

- Ministry of Finance에 제출된 Pillar2적용을 위한 Draft Resolution

(적용대상 납세의무자)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5억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자회사의 관할국에서 QDMTT 구성자회사에게 과세

(적용제외 자회사) 베트남내 소재 베트남자회사들 전체의 3개년 GloBE평균매출이 1천만 EURO미만이고, 3개년 순Globe평균이익이 1백만 EURO미만인 경우 QDMTT는 비과세됨.

(신고및 납부의무 성립시기) 회계연도 종료 후 12개월내 신고 및 납부

- MoIT의 Pillar 2 적용에 의거한 회사 지원방안 검토

(i) 고정자산 및 사회인프루투자에 대한 지원

(ii)high-tech product에 제조비용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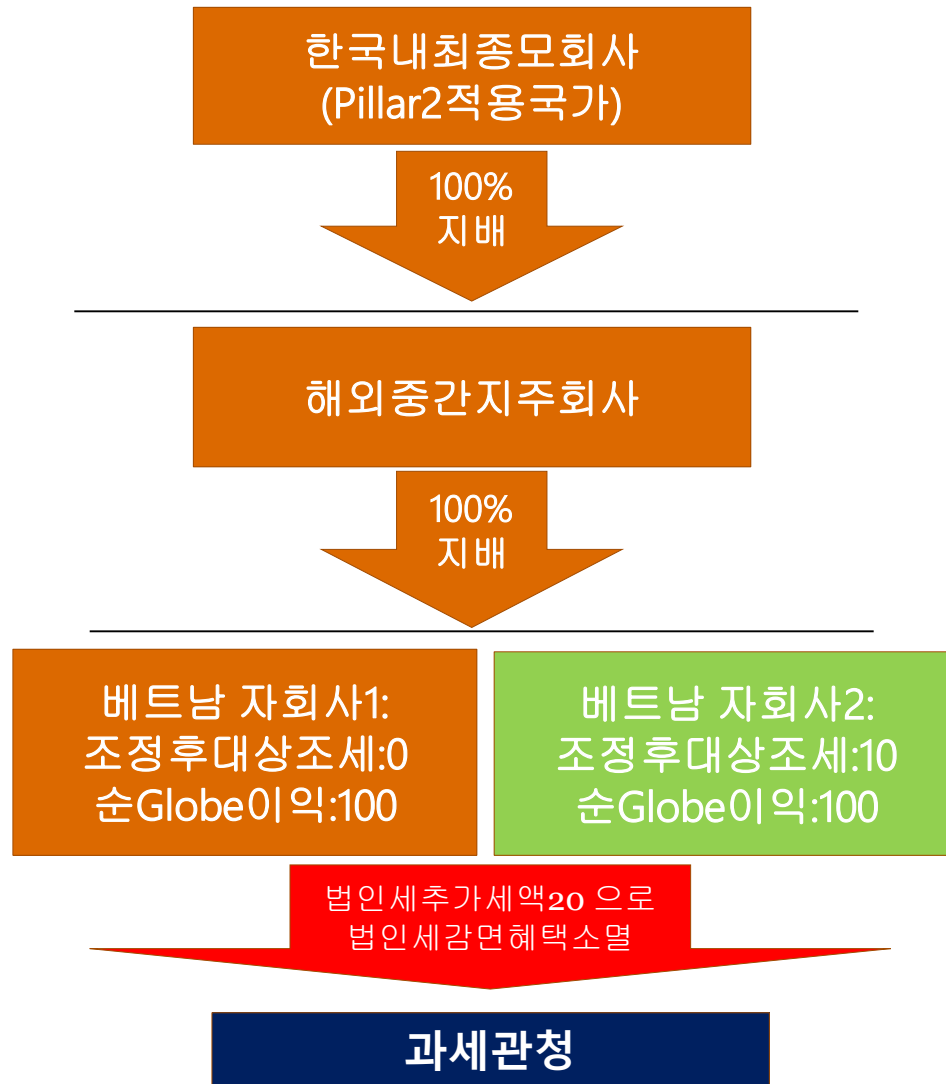
(iii)직업훈련 및 인적자본개발비용지원

(iv)R&D비용 지원



세금절세나 자금지원은 Globe이익을 증가시킬 것이므로(실효세율감소) 그 지원효과는 감쇄됨.

글로벌최저한세 소득산입규칙 계산예시



- 베트남세법상 QDMTT적용시
 - 베트남전체글로벌최저한세 추가세액을 베트남 과세당국에 20납부
 - 한국과세당국에 글로벌최저한세 납부액 없음
- 베트남세법상 QDMTT미적용시
 - 베트남전체 실효세율: $(0+10)/(100+100)=5\%$
 - 베트남전체 글로벌최저한세추가세액: $(15\%-5\%)*(100+100)=20$
 - 한국내 최종모회사는 한국과세당국에 20납부
 - 베트남 QDMTT는 없음.

조세법령

- 중앙은행이 발행한 Circular 08/2023/TT-NHNN에 의거한 외화표시차입금의 운영
 - 외화표시 연불조건부 매입채무는 외화표시 차입금 등록 및 신고의무 없음.
 - 외화표시 차입금은 차입자가 회사사업목적에 사용되어야 하며, 1개월 초과외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없음.
 - 중장기외화차입금의 사용목적은 사전신고 및 등록해야 함. 단기차입금도 사용목적, 지급예상일, 사용예상금액등을 DICA계좌 거래은행에 신고해야 함.
 - 장단기외화차입금은 사업목적의 실행, 외화표시차입금의 차환, 매입채무의 상환에 사용됨. 단, 내국발생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할 수 없음.
 - 외화표시차입금의 차환을 위한 신규외화차입시 금융비용의 증가가 가능하게 변경됨.
- 부가세율 8% 이하안의 연장 결의안 초안
 - 부가세율의 8% 인하를 2024년 6월까지 연장하는 결의한 초안이 정부와 국회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 Pillar 2도입을 위한 Draft Resolution 제출
 - 2023년 7월 재경부는 정부에 IRR(소득산입방식)과 QDMTT 2024년 1월 1일부터 도입하는 Draft Resolution 제출하였습니다.

2023년 조세변경 및 official letter

Official Letter

- 내륙운송통한 제품 수출입거래, 계속;

- 내륙운송통한 제품 수출입거래(3자간 무역거래)의 수출입면장 불가

2022년 10월 17일자 관세총국은 Official Letter No. 4357/TCHQ-GSQL과 17/05/2023자 Official Letter No. 676/GSQL-GQ2 dated를 공표함. 내륙운송 수출입거래 중 베트남에 투자활동(자회사설립), 지점, Rep office같은 사업장이 존재하는 외국인판매자(이하 “사업장이 존재하는 외국인판매자”라 함)가 중간거래자로 참여한 내륙운송 수출입면장발행을 불허하였습니다. 사업장이 존재하는 구매자와 판매자는 Point c, Clause 1, Article 35 of Decree No. 08/2015/ND-CP 에 의거한 inland Export/import CD를 발행받을 수 없으며 해당 CD거래의 폐지를 제안함. 아울러, 베트남내 재화공급자는 직접 베트남내 재화구입자에게 내국매출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MoF의 Decree No. 08/2015/ND-CP의 수정제안서

동 제안서에서 향후 관세총국의 Decree가 발효되는 날로부터 1년간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판매자는 inland 수출입면장 연장사용가능.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판매자가 판매시 변경거래구조 제안안:

- 외국인판매자를 제외한 내국판매로 전환.
- 베트남내 재화공급자가 수출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에 부과된 수입관세 면세를 받기 위해선,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판매자는 보세창고를 통한 수출입통관절차를 수행할 수 있음.
- 베트남내 재화구입자는 EPE로 전환을 고려할 수 있음.

2023년 조세변경 및 official letter

Official Letter

- 내륙운송 수출입거래의 수입관세환급, 계속;

2023년 9월 15일자로 관세총국은 Official Letter No. 4795/TCHQ-TXNK를 공표함.

Point c, Clause 1, Article 35 of Decree No. 08/2015/ND-CP 는 inland export/import CD발행 가능거래가 아님.

적법한 point a and point b거래에 의거해 내륙운송을 통한 수출입거래를 통해 수입한 수입자는 수입재화가 수출용제조업에 사용되고 **제품이 해외(EPE, EP Zone포함)로 수출된 경우엔**, 수입시 납부한 수입관세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

사업장이 존재하는 외국인판매자가 계약당사자인 Inland Import CD의 수입관세 환급위험 조재.

- 과거에 재화의 수입시에 import Duty납부하였으나, 수입자가 제조활동 후 제품이 해외로 수출되지 않는 거래와 관련한 수입관세(예컨대, GDC OL 발행 전 **사업장이 존재하는 외국인판매자**향 inland Export CD를 통한 수출거래) 또는,
- Point c, Clause 1, Article 35 of Decree No. 08/2015/ND-CP 에 의거해 **사업장이 존재하는 외국인판매자로부터 구입하고** Inland Import CD를 통해 납부한 수입관세는 환급청구할 수 없을 위험 존재. 추가 관세총국의 규정해석이 필요함.

- 내륙운송 수출입거래의 매입부가세 환급관련

2023년 9월 26일자로 국세청은 Official Letter No. 4271/TCT-CS를 통해 **사업장이 존재하는 외국인판매자**향 내륙운송을 통한 수출거래에 의해 inland Export CD를 발행한 베트남내 소재한 자회사인 판매자는 대응하는 매입부가세를 환급신청할 수 없다.

2023년 조세변경 및 official letter

Official Let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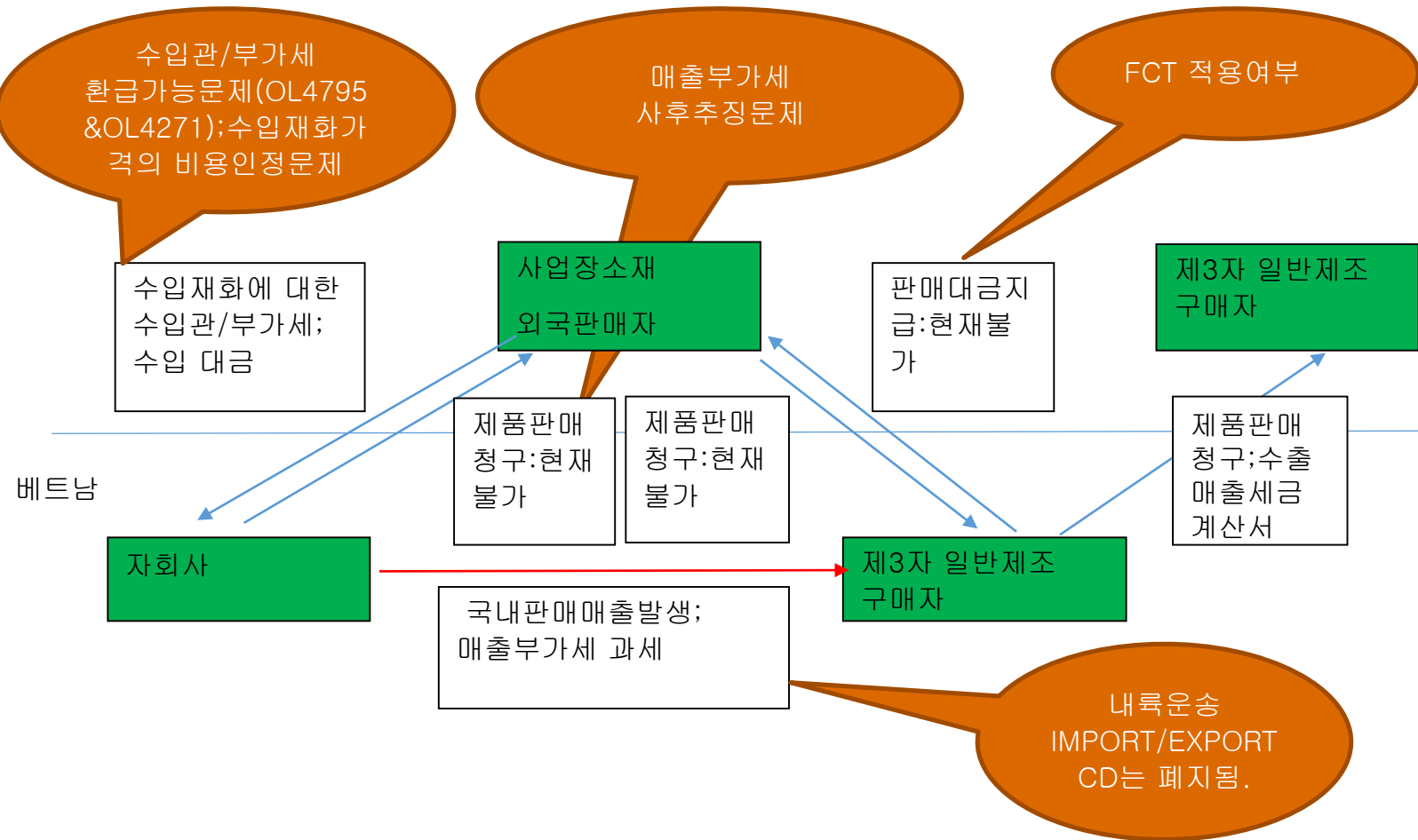
- 내륙운송통한 제품 수출입거래, 계속;
 - 사업장이 존재하는 외국인판매자향 중계매출시 자회사의 세제영향

과세위험 세목	해당하는 GDC OL 공표 전 발행 Inland Export/import CD관련	해당하는 GDC OL 공표 후 베트남내 고객사에 판매시
수입관세 환급	비환급(OL No. 4795/TCHQ-TXNK)	비환급
매입부가세 환급/공제	비환급(OL No. 4271/TCT-CS); 매입부가세 불공제 (추가확인 규정필요)	비환급
Output VAT	Inland export CD의 매출부가세 과소신고(추가확인 규정필요)	자회사가 매출부가세 납부
자회사가 사업장이 존재하는 외국인판매자로부터 내륙운송통해 수입한 재화의 구입원가의 비용처리	Inland Import CD의 부적격증빙사유로 비용불인정가능성 (추가확인 규정필요)	베트남내 고객사향 매출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비용인식
FCT과세	과거 납부한 FCT환급가능성 (추가확인 규정필요)	해당사항없음.

- 2023년 조세변경 및 official letter

내륙운송되는 수출입거래의 과세유형 예시

외국



2023년 조세변경 및 official letter

Official Letter

- 유형자산의 종속지점간 이동시 사용목적변경신고

2023년 10월 12일자로 관세총국은 Official Letter No. 5292/TCHQ-TXNK 를 공표함.

➤ 동일 회사내에 종속지점간 이동한 유형자산은 최초 수입시 수입관세 면제여부와 상관없이 타 지점으로 이동시 수입사용목적의 변경으로 봄.

➤ 최초수입한 지점은 사용목적변경신고하고 수입관세를 사후추가납부해야 함. 현재 장부가를 기준으로 수입관세 재산정 필요.

- 매출환입된 재화에 대한 매출부가세 발행

2023년 10월 11일자로 국세청은 Official Letter No. 4511/TCT-CS를 공표함.

매출자가 매출한 재화의 일부나 전체를 매출환입(반품처리)한 경우, 매출자는 기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대체/수정발행해야 한다. Local GAAP상 매출의 차감항목이고 부가세신고시엔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의무.

- 매입신고 누락한 매입부가세신고시기

2023년 6월 27일자로 박닌세무서는 Official Letter No. 2397/CTBNI-KKKTT를 공표함. 매입부가세신고를 종료한 후에 신고누락이 발견된 매입부가세는 매입부가세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해당 월로 소급하여 매입부가세신고서를 수정해야 함. 단, 수정신고는 세무조사 개시전에 수행되어야 함.

국세청이 2015년 11월 23일 발행한 Official letter에 근거해 세무조사 개시전에 발견시점 수정과 배치

2023년 조세변경 및 official letter

Official Letter

- 시장가격에 근거하지 않은 특관자거래에 대한 과세방침

2023년 8월 15일자로 하노이 세무서는 Official Letter No. 59259/CTHN-TTHT를 공표함.

- 재화 및 서비스의 거래를 특관자간 수행할 시 시장가격에 근거해야 함. 특관자간 거래가격이 시장가격이 아닐 경우, 이전가격세제 규정 Article 15 of Decree No. 126/2020/ND-CP에 근거해 이전가격이 재산정되고 과세됨.
- 세무서의 이전가격비교 Database, 별도의 평가보고서, 3개이상의 비교사례회사를 통한 산출세액의 재산정가능함.

- Export processing zone소재 회사가 유형자산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

2023년 7월 17일자로 하노이 세무서는 Official Letter No. 51359/CTHN-TTHT를 공표함. EP Zone에 소재한 회사가 유형자산을 베트남내 일반회사에게 매각할 경우엔 직접법을 적용한 Sale invoice를 매수자에게 발행해야 한다. 따라서, 매각차익에 인정부가세율을 적용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판매자와 구매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베트남국경내로 전달되는 재화의 구입거래는 외국인계약자세 과세

2023년 5월 17일자로 국세청은 Official Letter No. 1861/TCT-CS를 공표함.

외국소재 공급하는 자가 외국소재 공급받는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지정된 베트남내 수령자에게 전달되는 재화의 구입거래에서 외국소재 공급하는자를 대신하여 베트남내 수령자는 외국인계약자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유통업관련 FCT과세조건 검토 필요.

Official Letter

- 광고선전활동 및 차입시 조세처리방침

2023년 8월 11일자로 하노이 세무서는 Official Letter No. 58596/CTHN-TTHT를 공표함.

➤ 광고선전활동

DoIT등록의무를 준수한 광고선전활동에 사용된 재화와 서비스는 매출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음. DoIT등록의무 미준수시엔, 자가사용목적, 무상증여, 무상기증품 지급에 대한 Clause 5, Article 7 of Circular 219/2013/TT-BTC 근거해 매출부가세가 과세되는 것과 유사하게 매출부가세가 과세됨.

➤ 제3자로부터 차입거래시 발생이자(상업은행 차입금이자 포함)

대주가 공여하는 차입금액이 차주의 출자금의 25%이상을 구성하거나, 차주의 장단기차입금 총액의 50%이상을 구성하면, 해당 대주는 차주의 특수관계자임. 차주는 이전가격세제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손금산입 이자비용을 책정해야 함.

기업의 life cycle 별 주요 해당세목



세무조사 이슈

주요 세무조사 영역

- 조세면제혜택 해당여부(예컨대, 조세면제 조건을 준수했나?
사업확장신규사업이 존재하나?)
- 업무관련성 검토(예컨대, 손금의 업무관련성, 서비스구매계약을 통해
실재로 수령한 산출물과 회사의 업무와의 관련성 확인);
- 관련법에서 정한 적격 증빙문서를 비치하고 적격 세금계산서 등을
수령(수입재화 청산보고서와 일치하는 재고자산수불명세서,
적격매입세금계산서, 매입계약서, 거래합의서 등)
- 개인소득세(예컨대, 본사 출장자의 개인소득세 과세, 한국내
수령소득에 대한 베트남내 합산신고)
- 이전가격 과세제도(비교가능 동종회사의 업종 평균이익율 적정성)
- 외국인계약자세(과세권 면제여부, 적용세율, 조세조약 적용가능여부)
- 부가세(매입부가세환급사유 및 조건 검토, 수출과 국내매출 겸용시
매입부가세 안분근거)

회사의 대응방안

- 세무신고의 적법한 작성 및 적기납부
- 세법 규정의 변경시마다 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세무진단을 수행
- 검토/세무진단 수행 후 회사의 관련규정 및 처리지침 변경실행
- 조세조약에 대한 베트남의 과세권 면제가능성 검토(예컨대, 지분양도소득세의 과세권 면제사례, 단순 수입재화 판매업자에 대한 FCT 비과세)
- 세무조사전 증빙서류의 사전준비 필수
- 조세불복절차의 가능성 검토

서우회계법인베트남 소개

서우는 베트남 내 조세/회계자문, 재무컨설팅, 회계감사 및 HR서비스를 전문으로 수행하고자 전문가적 실무경험을 축적한 한국회계사들과 베트남 회계사들이 50여명의 현지 전문가들과 활동하고 있는 Leading 중견회계법인입니다. 베트남 pwc베트남에서 장기근속한 조성룡 대표회계사 및 Deloitte 베트남에 근속한 최준회계사, pwc베트남에 근속한 김형준회계사를 중심으로 베트남투자 및 진출에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노이 본점(참빛빌딩 10층) 및 호치민지점(CJ 빌딩 3층)에 각각 위치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회계사

(서우회계법인베트남 대표, 한국/베트남 CPA)

Tel: 024-3776-7050

Mobile Phone: +84 98 548 7377

Email: csrgs@seouvietnam.com

주소: 참빛빌딩 10층, 117 Tran Duy Hung, Hanoi City

김형준 회계사

(호치민 지점장, 한국 CPA)

Tel: 028-3636-4671

Mobile Phone: +84 90 247 7335

Email: kimhj@seouvietnam.com

주소: CJ빌딩 3층, 6 Le Thanh Ton, HCM City

최준 회계사

(호치민지점파트너, 한국/베트남 CPA)

Tel: 028-3636-4671

Mobile Phone: +84 813 767 067

Email: junchoi@seouvietnam.com

주소: CJ빌딩 3층, 6 Le Thanh Ton, HCM City